

# 학생준칙

(제정 1976. 9. 1.)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준칙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학생들이 진리, 평화, 자유의 교시 아래 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건학정신의 구현 등 학생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근거)** 이 준칙은 학칙에 근거를 둔다.

## 제2장 학생증

**제3조(교부)** 입학 수속을 마친 학생은 즉시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.

**제4조(등록확인)** 학생은 매 학기 등록을 하여야 하며, 등록하지 아니한 학생의 학생증은 효력을 상실한다.

**제5조(휴대의무)** ① 학생은 교내·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, 본교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② 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자는 수강, 수험 또는 도서관 열람실의 출입을 금하며, 그 밖에 학생에게 부여되는 모든 혜택과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11.4.25>

**제6조(대여 등 금지)** 학생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변조할 수 없다.

**제7조(재교부)** ①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 신청서(소정 양식)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학생서비스센터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전 항의 재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소정의 발급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## 제3장 학생활동

**제8조(단체조직)** ① 학생단체의 조직은 원칙적으로 학생회 산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, 학생단체를 설립·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3월말까지 단체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단과대학 학생회 산하의 단체인 경우 소속 학장에게, 총학생회 산하의 단체인 경우 학생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5.18., 2015.10.26.>

② 학칙 제3조에 따라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단체의 등록 및 활동은 일체 금한다.

③ 그 밖에 학생 단체등록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학생 단체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
**제9조(허가)** ① 전 조에 의하여 신청한 단체가 단과대학 학생회 산하의 단체인 경우 소속 학장이,

총학생회 산하의 단체인 경우 학생취업처장이 허가한다. 다만, 종교분과는 선교봉사처장을 경유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0.26.>

②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의 조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**제10조(활동기간, 재등록)** ① 학생단체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며, 계속 활동을 희망할 때에는 매년 3월 말 까지 소정의 심의를 거쳐 재등록하여야 한다.

② 재등록 신청이 없는 단체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한다.

③ 신규 학생단체는 1년간 가등록하여야 하며, 가등록기간 중 학칙 및 관계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재등록할 수 없다.

**제11조(변경신고)** 등록된 학생단체의 규칙 및 그 밖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단과대학 학생회 산하의 단체인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 후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경유하여 소속 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총학생회 산하의 단체인 경우 총동아리 연합회장을 경유하여 학생취업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5.18., 2015.10.26.>

**제12조(활동금지기간)** 학생의 단체활동은 정기시험 시작 7일전부터 시험종료시까지 할 수 없다.

**제13조(허가취소)** 학생단체의 활동이 학칙, 준칙 및 제규정에 위배되거나 본교의 품위를 손상 또는 교내 질서를 문란케 할 때에는 학생취업처장이 그 단체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0.26.>

## 제4장 집회, 게시, 인쇄물 배포

**제14조(집회결사의 허가)** 교내·외를 막론하고 본교 학생의 집회 및 결사는 학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취업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5.18>

**제15조(집회신고서 제출)** 본교 학생단체 또는 개인의 집회 및 결사는 집회신고서(소정양식)를 사전에 학생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학생단체등록 및 운영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. <개정 2012.5.18>

**제16조(광고물 허가)** 교내·외에 학생광고, 인쇄물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그 세부사항은 학생 간행물 발간에 관한 시행세칙 및 학생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.

**제17조(게시물 게재)** 허가된 광고 또는 게시물(간판, 플랜카드 포함)은 학생취업처장의 검인을 받고 게시장소와 게시기간을 지정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. 그리고 설치된 게시물은 설치자가 게시기간 종료 후 제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5.18>

**제18조(외부 게시물)** 본교 내에 외부기관 또는 개인광고 게시 및 인쇄물 배포시에도 그 원안을 학생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2.5.18>

## 제5장 각종 행사 참여

**제19조(교내행사)** 학생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기념식, 특강 등의 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0.26.>

**제20조(교외행사)** ① 단과대학, 학과(전공)별 운동경기와 학술강연, 그 밖의 대외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5.18., 2015.10.26.>

② 전교생의 대외 운동경기의 단체응원은 총학생회장의 신청에 의해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.

③ 교과과정 운영상 실시하는 교외 교육실습 및 견학 등은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5.18., 2015.10.26.>

④ 교과과정 운영과 관계없는 방학기간 중의 교외교육, 견학 등은 단과대학의 경우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총학생회의 경우 학생취업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2.5.18., 2015.10.26.>

⑤ 교외교육 및 실습 등에 따른 제반 부수 업무(출장 신청, 차량 신청 등)는 해당 단과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다.

**제21조(대외행사 금지)** 정기시험(중간, 기말고사)기간 중에는 운동경기와 학술강연을 포함한 일체의 대외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. 다만, 행사의 중요성으로 미루어 행사의 참가가 필요하다고 해당 학장이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참가할 수 있다.

## 제6장 학적부 기재변경

**제22조(변경)** 학적부 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변경사유가 기재된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정정신청서를 학생서비스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3.23.>

1. 성명 변경
2. 생년월일 변경
3. 본적지 변경
4. 주민등록 변경

## 제7장 보칙

**제23조(예의)** ① 학생은 교내·외의 생활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은 물론 교직원에 대하여 예의를 지키고 인격을 존중하며 품위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.

② 학생은 교내·외를 막론하고 일상생활을 통하여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일반 사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.

**제24조** 삭 제 <2015.10.26.>

**제25조(세부사항)** 그 밖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15.10.26.>

3-4-1-4 학생준칙

이 준칙은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준칙은 198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준칙은 198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준칙은 198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준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준칙은 198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준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준칙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준칙은 199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준칙은 199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준칙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부 칙

이 준칙은 200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준칙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준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준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준칙은 200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준칙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준칙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준칙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준칙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